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발굴에 애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나.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사항을 변경함(안 제9조제1항).
- 다. 그 밖에 오탈자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2 FAX : 02)3396-9055
- E-mail : paperdoll@junggu.seoul.kr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이상 5명이하” 를 “3명 이상 5명 이하” 로, “검사위원수” 를 “검사위원 수”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은” 으로, “자를 선임한다” 를 “사람을 선임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를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로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제1항 중 “검사위원중” 을 “검사위원 중”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기일내” 를 “기일 내” 로, “범위내” 를 “범위” 로 한다.

제6조 중 “결산심의시” 를 “결산심의 시” 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지연

등” 을 “지연 등”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유”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해촉하여야 한다” 를 “해임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제9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제2항 본문 중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를 “의장은”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일때” 를 “폐회 중일 때” 로, “차기” 를 “다음”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제개)” 를 “(감사위원의 제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를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결산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결산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3명 이상 5명 이하</u>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u>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생략)</p> <p>② <u>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u></p> <p>1. <u>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u></p> <p>2. <u>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u></p> <p>3. <u>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u></p>	<p>제2조(감사위원의 정수) ----- ----- <u>3명 이상 5명 이하</u>----- ----- <u>감사위원 수</u>----- --.</p> <p>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한</u> <u>다) 이외의 감사위원은</u> ----- ----- ----- <u>사람을 선임한</u> <u>다.</u></p> <p>1. <u>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u></p> <p>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예산·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u></p> <p>3.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p>

현행	개정안
<p><u>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u></p> <p>③ 의회는 <u>회계년도 출납 폐쇄</u>후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p> <p>④ (생략)</p> <p>제4조(책임감사위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u>감사위원중</u>에서 책임감사위원은 의원이 된다.</p> <p>② (생략)</p> <p>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감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u>기일내</u>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u>범위내</u>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용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u></p> <p>③ ----- <u>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책임감사위원) ① ----- <u>감사위원 중</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 <u>기일내</u> ----- <u>범위</u>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u>결산심의회</u>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p>	<p>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 <u>결산심의회</u>시 ----- ----- ----- ----- ----- -----.</p>
<p>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생략)</p> <p>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u>지연등</u>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연 등</u>----- ----- ----- -----.</p>
<p>제8조(실비변상) ①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실비변상) ① ----- ----- ----- ----- <u>범위</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li> <li>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li> <li>3.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li> <li>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중구세를 체납한 때</li> <li>5. 질병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li> </ol> <p>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li> <li>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li> <li>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li> </ol> <p>&lt;삭 제&gt;</p> <p>② 의장은 ----- ----- ----- 폐회 중일 때----- ----- 다음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검사위원의 제개) 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정 1991.4.25 조례 제152호

개정 1992.10.17 조례 제199호

개정 1994.11.26 조례 제270호

개정 1995.7.28 조례 제291호

개정 1997.1.18 조례 제357호

개정 2000.3.18 조례 제458호

개정 2003.6.27 조례 제583호

(일부개정) 2007.05.22 조례 제 756호

(일부개정) 2007.12.31 조례 제 789호

(일부개정) 2011.06.07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2.05.07 조례 제11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22, 2007.12.31, 2012.5.7)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이상 5명이 하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1994.11.26)

②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개정 2007.12.31, 2012.5.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신설 1994.11.26)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1992.10.17, 개정 2011.6.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1997.01.18, 개정 2011.6.7)

**제4조(책임검사위원)**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중에서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1994.11.26, 개정 2011.6.7)

② 책임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괄한다.(1992.10.17)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95.07.28)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또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7.01.18, 2007.5.22)

②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2.10.17, 1995.07.28, 2000.03.18, 2007.5.22)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1. 서울특별시 이외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개정 2012.5.7)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감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중구세를 체납한 때(1992.10.17)

5. 질병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일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992.10.17)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감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위원의 제개)** ① 감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1.6.7)

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부칙(1991.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부칙(2003.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